

의안번호	2217636
의 퇴 인	김윤의원
회 답 일	2026.7.1.
추계번호	26C1562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 (전공의 인력기준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에서 전공의가 제7조에 따라 수련할 수 있도록 <u>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수의 상한기준을 정하고</u> 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<u>전공의 인력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</u>(제1항) - 전공의 담당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-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종류별 특성 - 전공의의 수련단계별 수련 특성 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12조 (지도전문의의 지정)	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병원등의 지도전문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)	재량규정
3	안 제13조의3 (협력수련체계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, 지방의료원,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- 협력수련체계는 「필수의료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(제2항)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수련 체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(제3항) - 협력수련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재량규정
4	안 제15조의2 (전공의 수련교육원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둘 수 있다.(제1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교육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·단체를 수련교육원으로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·단체에 수련교육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(제4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) - 수련교육원의 조직·운영 및 지정,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6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2 (전공의 인력기준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 (지도전문의의 지정)	
3	안 제13조의3 (협력수련체계)	
4	안 제15조의2 (전공의 수련교육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전공의 인력기준(안 제7조의2)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세부기준 개발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식, 실시 주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, 현시점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전공의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인력기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·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가정이 어려움
 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6개 직종 보건의료인력*에 대한 직무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총괄(국민건강보험공단)에 대한 예산 5억 5,208만원과 조사 시스템 개발(카이스트)¹⁾에 대한 예산 1억 2,971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

1) 근무강도 측정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측정하는 이동 측정앱 개발

* 간호사, 간호조무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

- 다만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의 조사 시스템 활용 및 세부 기준 준용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며, 추가 연구 수행 규모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

□ 지도전문의의 지정·협력수련체계·전공의 수련교육원(제12조·제13조의3·제15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·협력수련·전공의 수련교육원 등 현행 정부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위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기수행 사업을 명문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, 추후 개정안에 따른 사업 및 예산 확대 여부 및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
- (안 제12조)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1항²⁾에 따른 지도전문의³⁾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, 이는 보건복지부의 “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”의 ‘책임지도전문의’로 이미 시행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의 “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” 사업은 8개 전문과목(필수과목)* 전공의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 혁신 지원금, 전공의 술기교육,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2026년 기준 970억 6,900만원 배정
 - *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
- (안 제13조의3)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, 시·도 내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을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하였는데,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“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”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보임
 - 보건복지부의 “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”은 전공의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수련거점 역할을 하면서 다기관 협력수련(파견수련)을 실시하는 것으로, 협력수련 선정 기관에게 사업비 지원(2026년 기준 11억원)

2) 제12조(지도전문의의 지정)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
2.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

3) 동법 제2조의3에 따른 “지도전문의”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[표 1] “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” 중 지도전문의 역할

구분	총괄 책임자	교육전담 지도전문의	책임 지도전문의
역할	프로그램 전반적 운영·관리 책임	전공의 전담 교육	전문과목별 수련 관리
		일대일 피드백, 실습 기회 부여 및 참관·지도	
수련업무 비중(예시)		20~30% 이상	40~50% 이상

자료: 보건복지부

- (안 제15조의2)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지정 또는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, 보건복지부는 이미 “전공의 수련 교육·평가체계 개편” 사업을 통해 전공의 수련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
 - － 현재 대한의학회가 수련교육원 위탁 업체로 선정되어 전공의 수련교육 기반 강화 및 수련환경평가 체계 개편 추진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예산 72억원이 편성됨

[표 2] 전공의 수련 교육·평가체계 개편 사업 개요

구분	내용
목적	○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 기능 강화 및 인프라 구축
예산	○ 72억원('26년, 신규)
사업 시행주체	○ 보건복지부, 대한의학회(공모)
사업내용	○ 전공의 수련교육 기반 강화 및 수련환경평가 체계 개편 추진 － ①수련교과과정 개선 및 전공의 역량개발, ②수련활동 모니터링 및 수련과정 이수 관리, ③수련중평가 체계 구축, ④지도전문의 역량개발 및 교육, ⑤수련환경평가 개편, ⑥수련병원 교육·컨설팅 지원 등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